

광주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646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석원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3805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3. B에게 4,850만 원을 대여하고, B의 2019년 1월분 계금 150만 원을 대납한 B의 채권자이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6. 20. 조카사위였던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각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조합인 채권최고액 6,500만 원,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9. 7. 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B의 다른 채권자인 L, M은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00698호), 위 사건에서 2020.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L에게 4,545만 원, M에게 455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1나52890호) 2022.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2. 3. 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라.항의 판결이 확정된 후 2022. 3. 4.부터 2022. 4. 18.까지 L, M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의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위 1.의 라.항 기재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을 마쳤고, 그와 사해행위의 범위가 중첩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면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부동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피고의 소유권이전 당시도 같다) 위 1.의 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해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1억 3,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8,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데, B의 다른 채권자인 L, M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에 기하여 위 5,000만 원 전부를 이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마친 사실은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과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중첩되는 위 사해행위 전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과 위 1.의 라.항 사건을 병합하거나 또는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에게 불확지공탁을 함으로써 수인의 취소채권자들로 하여금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 원고가 불확지공탁으로 인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등이 여러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병합을 신청해야 한다거나 그중 일부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른 취소채권자들을 고려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물출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공탁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불확지공탁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공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2)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동구 동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아파트 동

1층 내지 9층 각 759.03㎡

지하층 503.5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동구 대 2,7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 콘크리트조 59.7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78200분의 2708 끝.

